

병합심리신청

사 건 2000고단 000호 상해치사

피고인 0 0 0

귀원에 재판계속중인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 등 사건은 현재 ○○지방법원 항소심에 재판계속중인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므로 신속한 재판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동 사건을 귀원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.(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)

다 음

- 1. 병합할 사건의 표시
 - 사 건: ○○지방법원(항소 제○부) 20○○노○○○호
 - 사건명 : 사기
 - 피고인: 000

2000. 0. 0.

위 피고인 ○ ○ ○ (인)

○ ○ 고 등 법 원 제○형사부 귀중

				OF NUSCEED STATES
제출기관	사건계속 법원	관련법규	형사소송법 300조	www.klac
신 청 인	법원(직권)검사· 피고인 또는 변호인	제출부수	신청서 1부	
불복절차 및 기간 (항소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급법원에 병합심 및 기간 에 있는 사실을 같은 병합심리신청서류로 고지)				